

고 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19-92호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

2019년 8월 8일

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1. 「건설부고시」 제470호(1973.12.1)로 구역지정, 「서울특별시고시」 제2004-60호(2004.2.27), 「서울특별시고시」 제2009-461호(2009.11.19.), 「서울특별시고시」 제2014-261호(2014.7.17.) 및 「서울특별시고시」 제2016-99호(2016.11.3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, 「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」 제2017-83호(2017.10.26.)로 사업시행인가된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주택과(☎ 02-879-6303)에 비치하고,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1)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) 정비사업의 명칭 :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 일대

2) 면 적 : 55,455.3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 : 봉천제4-1-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배인태)

주 소 :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411, 2층 (봉천동)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. 07. 30.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 주요 내용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가) 건축개요 : 지하3층/지상28층 아파트 9개동 997(임대 200)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

용도		동수	층수	세대수	대지면적	건축 연면적	비고
주택	소계	9		997	33,512.6	142,307.89	
	분양	9	지하3층~지상28층	797	28,836.8	139,395.58	
	임대			200	4,515.0		
상가		-	지상2층	-	160.8	452.31	
보육시설(구립)		-	지하2층~지상5층	-	-	2,460.00	
건폐율		20.90 %			용적률	285.14%	

나) 대 지

(단위 : m²)

계	공동주택		상 가	정비기반시설	종교시설	복지시설	존치
	분양	임대					
55,455.3	28,836.8	4,515.0	160.8	13,691.1	1,930.2	909.7	5,411.7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대 지	소재지 (또는 부호)	용도	규모(세대, m ²)	보류지(세대)	처분방법	비고
	계		997세대	4세대/1개동		
	획지 1	분양아파트	797세대	4세대	조합원 및 일반분양	
		임대아파트	200세대	-	서울시에 매각 처분	
		근린생활시설	452.31	1개동	조합원 및 일반분양	총10개동 분양
		공공보육시설	2,460	-	사업시행자가 조성후 관악구에 기부채납	지하2층/ 지상5층

공급대상	주택규모별(전용면적㎡ 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					상가 면적 (㎡)	그 밖의 건축 시설면적(㎡)
	계	38	42	52	58A	58B	59A	59B	59C	84A	84B	84C	84T		보육시설(구립)
계	997	67	65	32	12	43	180	80	73	283	154	2	6	452.31	2,460.00
토지등 소유자	693				9		180	80	73	283	60	2	6	98.38	
보류시설	4										4			39.06	
일반분양	100				3	7					90			314.87	
임대	200	67	65	32		36									

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가)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종류 및 명칭	규 모	비 고
계	13,691.1	시행자 설치 후 관악구에 무상귀속
도로	3,558.2	
공원	10,132.9	

나)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종류 및 명칭	규 모	비 고
계	7,896.9	
도로	7,896.9	

4)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2020년 1월 (예정) 끝.